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5. 2.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 가. 제출일자 : 2013년 4월 25일
- 나. 제출자 : 고기판 의원 외 6인
- 다. 회부일자 : 2013년 4월 25일 회부
- 라. 상정일자 : 제17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3. 4. 2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고기판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임기만료 및 해촉된 통장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규정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재난대비, 복지 도우미로서의 역할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증대되고 있는 통장의 기능을 행정수요에 부합되게 임무를 보강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제1조)
-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및 해촉된 통장의 재위촉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구체화 함
(안 제5조)
- 다양화·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부합되게 통장 임무 정비
(안 제7조제1항각호<1~9호>)

-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안 제7조제1항1호)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안 제7조제1항2호)
-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지원(안 제7조제1항3호)
-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안 제7조제1항4호)
-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안 제7조제1항5호)
-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관리 협조(안 제7조제1항6호)
-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품·수해, 제설 등 지원(안 제7조제1항7호)
- 재해 발생 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안 제7조제1항8호)
- 각종 고지서,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안 제7조제1항9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기영)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기만료 및 해촉된 통장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규정하고 통장의 기능을 행정수요에 부합되게 임무를 보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 본조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였고,
 - 안 제5조에는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및 위촉 해제된 통장은 3년 이내에는 재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는 재난대비, 복지 도우미로서의 역할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통장의 임무를 보강 및 정비함.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및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그 직에서 위촉 해제된 통장의 재위촉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1988년 제정 이후 등 기능전환 등을 거치면서 일선행정의 보조자 기능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

는 행정기관과 주민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임무를 보강 및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재위촉에 따른 불필요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통장의 기능과 역할을 현재의 행정 수요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
----------	-----

발의연월일 : 2013년 4월 일
발 의 자 : 고기관 의원 외 명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임기만료 및 해촉된 통장을 재위촉하는 경우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규정하여 조직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재난대비, 복지 도우미로서의 역할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화·증대되고 있는 통장의 기능을 행정수요에 부합되게 임무를 보강하여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제1조)
- 나.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및 해촉된 통장의 재위촉에 필요한 경과기간을 구체화 함.(안 제5조)
- 다. 다양화·증대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부합되게 통장 임무 정비(안 제7조제1항각호<1~9호>)

-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안 제7조제1항1호)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안 제7조제1항2호)
-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지원(안 제7조제1항3호)
-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안 제7조제1항4호)
-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안 제7조제1항5호)
-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관리 협조(안 제7조제1항6호)
-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안 제7조제1항7호)
- 재해 발생 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안 제7조제1항8호)
- 각종 고지서,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안 제7조제1항9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불필요
- 다. 합 의 : 자치행정과 합의
- 라. 기 타 : 조례안 별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장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6항”을 “제4조의2제5항”으로 한다.

제5조제4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제5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위촉 해제된 통장은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제1항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
3.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지원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5.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6.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관리 협조

7.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

8. 재해 발생 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9. 각종 고지서, 통지서 송달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가구주 또는 주부로”를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로 한다.

제10조 중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문서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을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이용”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반장에게는 상여금”을 “반장에게는 상여금 또는 보상품”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하게 전달하고 동행정 및 주민자조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동의하부조직인 통·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4조의2제5항----- ----- ----- ----- ----- ----- ----- ----- -----.</p>
<p>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축)</p> <p>① ~ ③ (생략)</p> <p>④ 구청장은 통장을, 동장은 반장을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축 해제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5. · 6. · 7.(생략)</p> <p><u><신설></u></p>	<p>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축)</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u></p> <p><u>6. · 7. · 8. (현행 제5호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u></p> <p><u>⑤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 또는 제5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위축 해제된 통</u></p>

제7조(임무)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아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파악
4. 각종 시설 확인
5. 자치회관 및 새마을사업추진협조지원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장은 그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임무) ① -----

-----.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및 반상회 운영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 불편사항 파악 보고
3.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과 틈새계층·위기가정 발굴 지원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5.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6. 각종 공공시설물 확인 및 유지·관리 협조
7.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
8. 재해 발생 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9. 각종 고지서, 통지서 송달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생략)

제8조(반상회) ① 반상회는 반에 거주하는 가구주 또는 주부로 구성한다.

②、③ (생략)

제10조(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문서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장에게 수당과 상여금을, 반장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협조 및 적십자회비 모금 지원

10.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8조(반상회) ① -----
-----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편의제공) -----
-----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

제11조(수당 등) ① -----

----- 반장에게는 상여금 또는 보상품-----
-----.